■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 <개정 2011.3.3>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제거업자)	현장명(공사명·작업명) 교사동 석면텍스 해체제거공사	
	현장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640 (과림동, 한국글로벌중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번호 안 산-20190263	업자명(상호) (주)재경알앤씨
	전화번호 031-431-0238	대표자 이 재 헌

2. 측정기간 - 2020년 01월 11일 (1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전 용 욱	산업위생관리기사	94206021159N	-
이 민 정	관련학과전공	-	분석사

4. 측정결과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측정농도 (개/㎤)	초과여부
== 별지참조==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 별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01월 12일

(주)금강석면환경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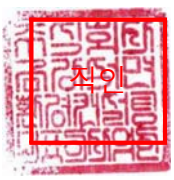

석면해체·제거업자 (주)재경알앤씨 귀하

4. 측정결과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 (ℓ/min)	측정농도 (개/㎤)	초과여부
P1	100	10.35	0.003	미만
P2	100	10.29	0.002	미만
P3	100	10.32	0.002	미만
P4	100	10.38	0.004	미만
P5	100	10.34	0.003	미만
P6	100	10.28	0.004	미만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B동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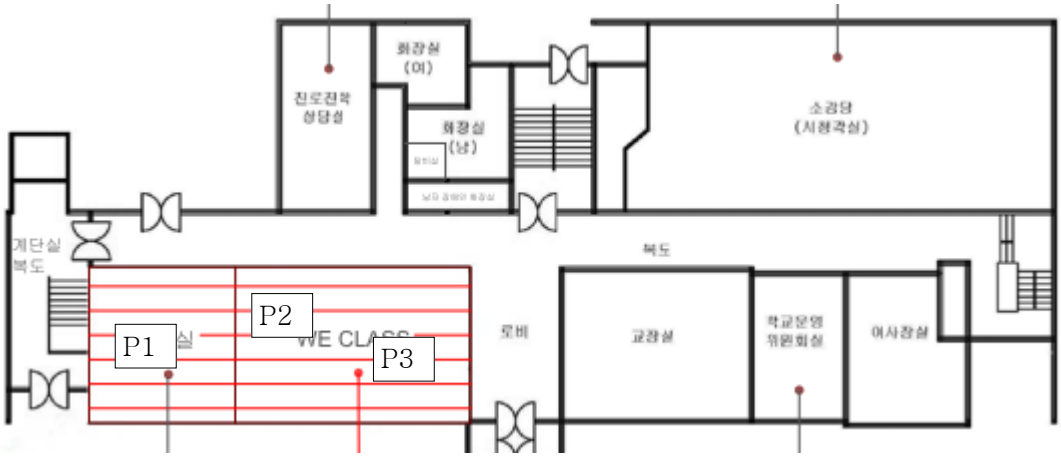

B동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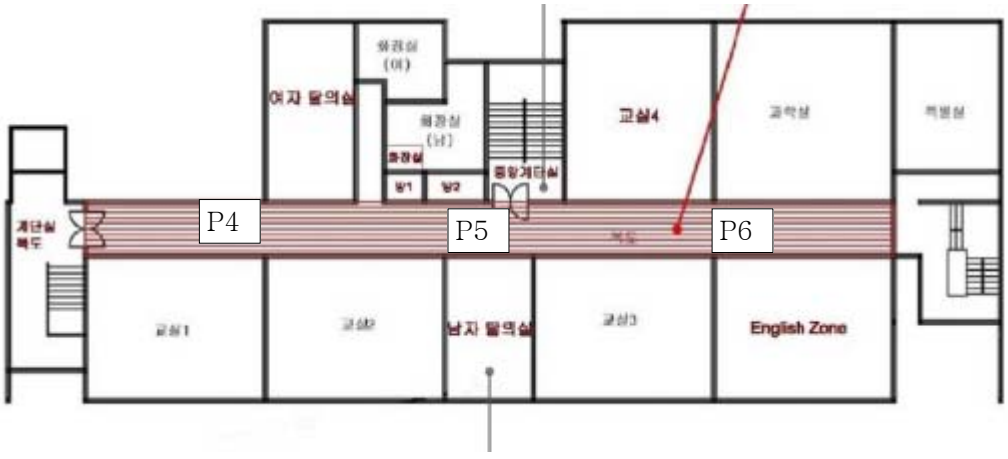

참 고 사 항

1. 시료채취 수

- 시료채취 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 제10조에 의거하여 산정됨.

2. 측정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 제9조에 의거하여
  -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
  -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
  -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
  -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 상기사항을 확인 후
  -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1~16L/min의 유량으로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하였다.

2. 측정 및 분석장비

시료채취 펌프	시료채취 펌프	위상차 현미경